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8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서영교·강득구·김민철

김승원 · 김영배 · 김주영

송재호 · 오영환 · 유영찬

이개호・이수진(비)・한병도

홍기원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상황임.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노약자용 보 행기를 보행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방향에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다. 실제 교통 약자의 왕래를 중심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각 보호구역의 지정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유모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 보행보조용 의자차 및 노약자용 보행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를 "길가장자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	10
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	
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	<u>유모차, 행정안전부령으</u>
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로 정하는 어린이용 탑승형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놀이기구,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및 노약자용 보행기
부분을 말한다.	
11. ~ 33. (생 략)	11. ~ 33. (현행과 같음)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생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	②
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u>차</u>	<u>길</u>
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	<u> 가장자리</u>
<u>자리</u>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u>다만, 도로의</u>	<u><단서 삭제></u>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	
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저 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 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
0. 4 11 1 12 1/1 /11 0 11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u>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u> <u>시설</u>
<u>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u> <u>시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 3의2. (생략)
-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u>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u>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③ (생 략)

1
<u>노인복지시설</u>
2. ~ 3의2. (현행과 같음)
4
<u>장애인복지시설</u>
②·③ (현행과 같음)